이의통지와 관련된 안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또는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관리인 등의 이의가 있어 첨부된 이의통지서로 이를 통지합니다.

귀하가 신고한 권리에 대한 시·부인의 자세한 내역은 관리인의 사무실(당사전담반 ☎ 031 - 610 - 2552 ~ 7)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채권자는 이의자(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 등)를 상대로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이의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이의통지서 내용 중 '이의액' 부분)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확정재판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되 작성방법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의통지를 받은 회생채권(담보권)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의 경우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확정재판신청 또는 소송수계신청을 이의통지서 하단의 신청기간 내에 하지 않으시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용원

※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수계절차를 밟으려면 2021년 7월 12일까지 이 법원 또는 소송 계속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회생채권(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 절차 안내

서울회생법원 제4부에서 송부한 채권(담보권)신고에 대한 이의통지서를 송달받은 채권자가 불복하여 조사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기간 내에 아래를 참고하시어 회생채권(담보권)조사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생채권(담보권)조사확정신청 양식 :

● 별첨된 양식 또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http://slb.scourt.go.kr)
"민원서식 양식모음란([법인회생]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안내 및 신청서)"

2. 신청서 작성 방법 :

● 신청서 작성은 첨부된 작성례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연락처 및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 1,000원 및 송달료(51,000원)을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 및 송달료는 신한은행에서 납부가능하고 송달료는 '송달료예납'으로 처리하시되, 신청서에는 인지 및 법원제출용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회사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 방법 :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방향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제2종합민원실)

● 우편 접수 시에는 이의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조사확정재판부 앞)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례)

수입인지 1,000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 건 번 호　　201○ 회 합 ○○○ 회 생

신 청 인　　최○○ (440101 - *******)

주소 : 서울 ○○구 ○○동 ○○

연락처 :

상 대 방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 ○ ○

서울 ○○구 ○○동 ○○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5,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07. ○. ○. 채무자 ○○ 주식회사와 인쇄용지 ○○장을 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채무자 ○○ 주식회사에 인쇄용지 ○○장을 납품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자 ○○ 주식회사는 2007. ○. ○. 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2007. ○. ○. 귀 법원에 5,000,000원의 인쇄용지 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채권 부존재(기 변제)'라는 이유로 신청인이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습니다.
4. 신청인이 2007. ○. ○. 채무자 ○○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종전의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지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닙

니다. 따라서 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한 이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5.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5,000,000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귀 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최○○ (인)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물품거래계약서
2. 소갑제2호증	납품영수증
3. 소갑제3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귀중

* 송달료 납부기준 : 당사자 수 x 5,100원x 5회
* 위 신청서는 기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입인지 1,000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 건 번 호　　20 ○○ 회 합 ○○○○　　회 생

신 청 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상 대 방　　채무자 : 주식회사 ○○○의 관리인 ○○○
주 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2020.　.　.

신청인　　(인)

소 명 방 법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귀중